

이사회 규정

2021년 3월 29일



이사회규정

분류번호	I- 경영 - 02
주관부서	이사회사무국
제·개정 이력	1977. 1. 1. 제정
	1977. 9. 1. 1차 개정
	1979. 5. 1. 2차 개정
	1985. 2. 28. 3차 개정
	1997. 2. 28. 4차 개정
	2000. 3. 17. 5차 개정
	2001. 1. 29. 6차 개정
	2004. 3. 10. 7차 개정
	2005. 2. 22. 8차 개정
	2005. 4. 4. 9차 개정
	2007. 7. 31. 10차 개정
	2008. 4. 25. 11차 개정
	2009. 3. 13. 12차 개정
	2012. 3. 23. 13차 개정
	2014. 9. 29. 14차 개정
	2017. 3. 24. 15차 개정
2021. 3. 29. 16차 개정	

SK 네트워크스 주식회사

차 례

- 제 1조 (목적)
- 제 2조 (적용범위)
- 제 3조 (권한)
- 제 3조 2 (경영철학의 실행)
- 제 4조 (구성)
- 제 5조 (이사회 소집)
- 제 6조 (소집절차)
- 제 7조 (의결방법)
- 제 8조 (감사위원회)
- 제 9조 (이사회 내 위원회)
- 제10조 <삭제>
- 제11조 (부의사항)
- 제12조 (위임)
- 제13조 (의안설명)
- 제14조 <삭제>
- 제15조 (의사록 작성 및 보관)
- 제16조 (이사회 사무국 및 간사)

附 則

이사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3조의2 (경영철학의 실행)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의 기업문화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이사회는 SK Brand의 사용에 있어 Brand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 ④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SK 기업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 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 실행하도록 한다.

제4조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③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소집 청구에 대하여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이사 또는 소관부서의 해당 임원이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또는 소관부서의 해당 임원은 이사회 간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간사는 부의안건을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에 서신,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으면 제2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한하여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이사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감사위원회)

-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등 운영 절차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제8조의 감사위원회 외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포함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각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각 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소집 및 의결 등 운영 절차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이사회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2009.3.13. 삭제>

제11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 또는 승인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의 승인(보고)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함)의 승인
 - 나. 정관의 변경
 - 다. 회사의 해산, 합병
 - 라. 자본의 감소
 - 마. 영업보고서의 승인
 - 바. 주주제안에 대한 주주총회 부의 여부 심의
 - 사.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3. 경영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 나. 경영계획(예산포함)의 승인
 - 다.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및 지배인의 선임, 해임 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

- 라.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설치, 폐지 및 그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 마.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 사. 이사회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 아.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또는 기존사업 철수(전년도 매출액 기준)
- 자.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 차.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취득가액 기준. 단,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처분
- 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취득가액 기준. 단,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단, 자금 운용 관련 투자차원의 유가증권 취득은 제외한다.
- 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주요 내용의 변경 포함)
- 파. 주주대표소송의 소송 수행 또는 소송 참가
- 하. 아목 내지 카목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투자, 보증, 담보제공, 취득, 처분, 출자에 관한 금액이 당초에 승인한 것 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거.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사회 승인 사항
- 너. 본 규정 제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영철학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법의 개발 및 수정
- 더.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다.

러. 기업지배구조현장의 제정 또는 개폐

4.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사채의 발행

다.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5.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 담당 업무의 위촉 또는 해촉

나. 이사 또는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와 회사간 거래승인

다. 상법 제397조의2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회사의 사업 기회 이용 승인

6.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7.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2009.3.13. 삭제>

③ 이사(해당 업무의 담당 임원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해당 임원 등)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분기, 반기 경영실적(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함)

2. 분기별 이사회 내 위원회 심의결과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및 계획

5.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6.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이 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 더목 단서에 따른 집행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되는 사규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위임)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정관 또는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위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 해당 임원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 ③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의안설명)

이사회 의장은 안전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안전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승인) <2009.3.13. 삭제>

제15조 (의사록 작성 및 보관)

- ① 의사록은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 의사록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은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은 간사가 보관하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 사무국 및 간사)

- ① 이사회에 이사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사무국을 둔다.
- ② 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한다.
- ③ 이사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는 업무분장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국원을 임명한다.
- ④ 간사는 이사회 사무국장이 담당하며, 이사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원 중 1인을 보좌간사로 지명하여 간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모든 조직에게 조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력을 요청받은 조직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附 則

1. 본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5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7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0년 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1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4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05년 4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07년 7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08년 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5조, 제7조 제5항,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